■ 총포·도검·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[별지 제25호서식] <개정 2026. 1. 8.>

화약류 응급조치 신고서

접수번호	접수일자	처리기간 즉시(3근무시간 이내)

신고인	성명 (법인의 경우 대표자)	주민등록번호
	주 소 (전화번호 :)	
	사무소 소재지 (전화번호 :)	

신고 내용	화약류의 종류 및 수량
	폐기사유
	폐기방법
	폐기장소
	폐기일시
	폐기책임자
	위해 예방 방법

「총포·도검·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」 제36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6조에 따라 화약류에 대한 응급조치 사항을 위와 같이 신고합니다.

년 월 일

신고인 (서명 또는 인)

경찰서장 귀하

첨부서류	없 음	수수료 없음

210㎜×297㎜[백상지 80g/㎡(재활용품)]